

## 7. 학생단체 여행 및 연수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 학생단체의 여행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2011.7.1. 자구수정)(2021.6.22. 개정)

제2조(정의) 학생단체 여행 및 연수라 함은 해당 학년 학생의 60%이상, 학생회와 동아리간부의 60%이상, 동아리 회원 15인 이상이 참여하는 수련회, 현장답사, 졸업여행, 견학, 연수 등을 말한다. (2020.4.21. 개정)

제3조(여행허가) 방학기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학기 중에는 학교수업 및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.

제4조(절차) ①학년의 경우에는 대표학생이 학생단체 여행 및 연수 신청서를 작성,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1주일 전까지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2019.2.8.개정)(2020.4.21. 개정)

②총학생회, 동아리연합회의 경우에는 대표학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1주일 전까지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2019.2.8.개정)

③신청서에는 인솔 교직원, 참가자명단과 여행기간에 대한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준수사항) 해외여행 및 연수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국가나 본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법령 및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3. 여행(연수)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고 기간을 연장 하여야 한다.
4.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해외여행(연수)을 할 경우에는 학생지원처에 신고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 (2019.2.8.개정)

제6조(여행의 제한)학교수업 및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체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